2023년 제3차 사회서비스 정책포럼 자료집 사회서비스 분야

2023. 9. 8.(금) 14:30~17:00



보건복지부 🔨 중앙사회서비스원 2023년 제3차 사회서비스 정책포럼

2023년 제3차 사회서비스 정책포럼(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개요

- (주제)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 * 임팩트 투자 등 사회적가치가 화폐 환산 가능한 투자, 융자·대출, 보증 등의 지원
- (일시) 2023. 9. 8.(금) 14:30 ~ 17:00
- (장소)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장
- (방법) 대면·비대면 혼용 ※ 중앙사회서비스원 YouTube 온라인 생중계
- 발제자, 토론자 현장 참석, 행사는 온라인 실시간 송출

○ 세부일정(내용)

시 간			진 행 내 용	비고
14:30 ~ 14:35 '5		′5	■개회 및 주요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35 ~ 14:40		′5	■개회사	사회서비스정책관
			■ 인사 말씀	중앙사회서비스원장
1 부	14:40 ~ 14:55	′15	■발제①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장지연 기반조성그룹장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14:55 ~ 15:10	'15	■발제②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향 및 정부의 역할 - 사회서비스 투자 중심으로	박창균 부원장 (자본시장연구원)
	15:10 ~ 15:25	'15	■발제③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 방향	김효선 변호사 (법무법인 더함)
	15:25 ~ 15:35	′10	■휴식	토론 준비
2 부	15:35 ~ 16:55	'80	■토론 김기룡 대표(플랜엠), 김민석 본부장(경기도사회적경제원), 노영한 국장(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손석조 본부장(신협중앙회), 장은섭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좌장 : 조상미 원장 (중앙사회서비스원)
	16:55 ~ 17:00	′5	■ 폐회	사회자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장 지 연 기반조성그룹장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제3차 사회서비스 정책포럼 –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장 지 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기반조성그룹장)



제3차 사회서비스 정책포럼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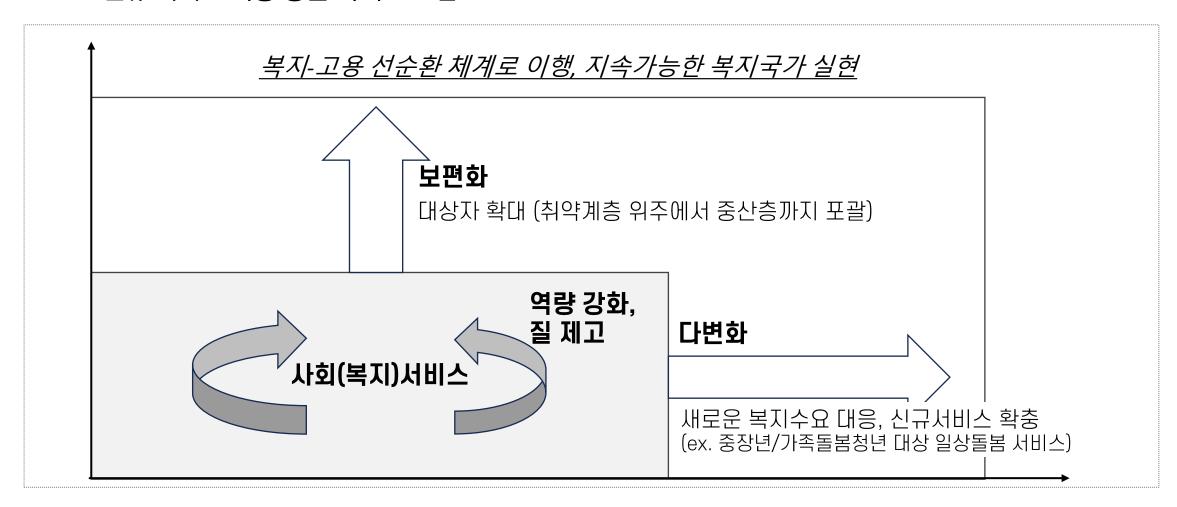
1. 관련 현황

2. 국내·외 사례

3. 시사점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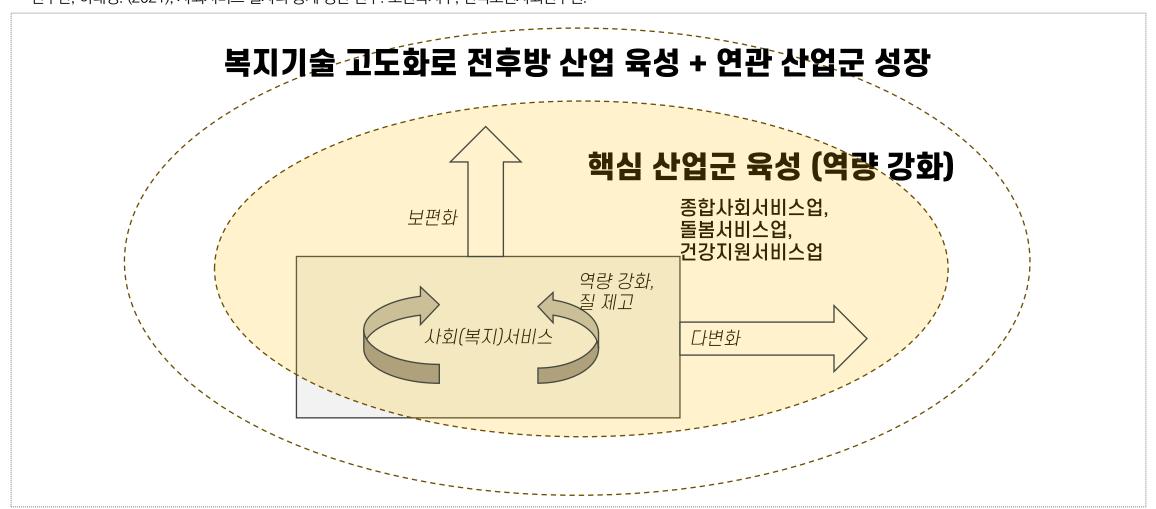
- (배경)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방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 (목적) 서비스 제공조직 역량 강화를 통한 품질 제고, 대상자 확대를 통한 보편화,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신규 서비스 확충 등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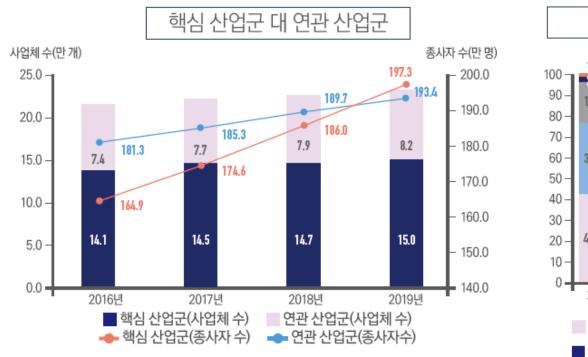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체계(SSISC) 기반으로 안수란 등(2021)*이 제시한 '핵심산업군'이 주요 정책 대상이 되고, '연관산업군' 및 이들 두 산업군의 전후방 산업이 될 복지기술을 함께 육성하는 것이 필요

* 안수란, 하태정. (2021), 사회서비스 일자리 통계 생산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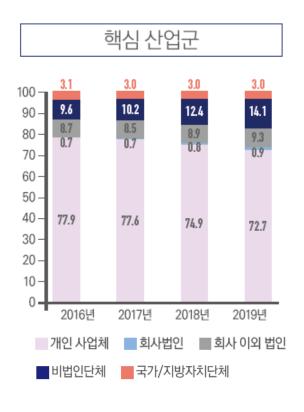


지원 대상 현황

- 2019년 기준 핵심산업군에 속한 사업체 수는 약 15만 개, 종사자 수는 197만 명
- 사업체 중 종사자 규모 50인 미만 93.1%, 개인사업체 72.7%







^{*}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제431호 (2022.11.21)

성장 모델

- 약 50인 규모가 되면 운영이 안정화되고 새로운 시도를 할 여력이 생긴다고 진술 (제공기관인터뷰)
 - * 종전의 보건/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소기업 판정 기준은 상시근로자 50인 이하였음 (현재는 연매출 10억원 이하로 변경)
- 일정 규모를 넘어서려면 고용과 일자리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 (성장 모델) 진입 단계 안착 단계 성장 단계 규모화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음

신입 난계	안작 난계	성상 난계
10~30인	50인 내외	100~3002
재가/방문 서비스	운영 안정화	2가지 이상 서비:
개인사업자 다수	효율적 운영이 관건	신규 서비스 진출 운영 등 새로운 시!
		지역/민간 지 전근/확용하며

성장 단계 규모화 단계 300인 이상 300인 이상 기지 이상 서비스 제공 교육/매뉴얼 등 관리체계 지역사회 신뢰/영향력 영등 새로운 시도 관심 기역/민간 자원 접근/활용하며 성장 보유

자금 수요

(소기업) ______(<mark>중기업)</mark>

잉여 비축, 위험 흡수, 혁신 시도

진입	단계
----	----

10인 미만

재가/방문 서비스

개인사업자 다수 (자활, 자기고용 의미)

창업자금, 운전자금

안착 단계

50인 내외

운영 안정화

효율적 운영

현상 유지

운전자금, 시설자금

성장 단계

100~300인

신사업 위한 교육, 시설 운영 등 시도

지역/민간 자원 접근/활용해 성장

운전자금, 시설자금 <u>사업개발비</u>

규모화 단계

300인 이상

교육/매뉴얼 등 품질관리 체계 구축

지역사회 신뢰/영향력 형성

거점기관으로 성장욕구 보유

자산화, 기술투자

- 성장 욕구 가진 기업은 중기업 단계로 육성 (법인화)
- 유지하려는 기업은 소상공인 인프라 접근성 제고
- 향후 거점화 된 기업과 협력해 품질 관리 (교육 등)

- 성장자금 투입으로 육성 (+ 회수 방안 마련)
- 성장 과정에서 지역의 거점기관 역할 촉진
- 선도 기업의 전후방 산업 진출 욕구 대응

☞ 성장을 촉진하는 자금을 중심으로 설계하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특성 고려

제3차 사회서비스 정책포럼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1. 관련 현황

2. 국내·외 사례

3. 시사점

얼룩말 연합 (zebra unite)

대안적인 공급/회수 방식 개발 발굴/적용 노력

<u>회수 방식 (예)</u>

- 공동체/지역사회 매각 (Exit to Community)
- 규모화 지원 임팩트 펀드 (Secondary Impact Fund)

<u>공급 방식</u> (예)

- 재량권 있는 대출 <u>ex. 성공불 융자</u>
 - . 사업이 실패할 경우 심의를 거쳐 융자금 감면
 - . 성공할 경우 원리금과 함께 특별부담금 부담
- 협동조합 출자 <u>ex. 우선 출자제</u>
 - . 일반 조합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 수취 가능
 - . 의사결정 참여 제한

https://futurechosun.com/archives/44307 https://zebrasunite.coop/invest '유니콘' 환상 탈피··· 유색인종·여성 등 두루 어우러진 윤리적 스타트업 추구



"스타트업계에는 얼룩말이 필요하다, 유니 콘이 아니라!(Startup community needs zebras, not unicorns!)"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아동을 위한 교육용 앱을 만드는 덴마크의 소셜 엔터프라이즈 '티모'의 최고운영책임자인 토마스 N. 호르스테드가 최근 현지 일간지에 이 같은 주장을 담은 기고문을 썼다. 스타트업 투자자로도 유명한 그는 "지속가능한 성장보다는 기업가치를 부풀려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소수의 유니콘이 투자금을 독점하면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얼룩말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니콘은 재계에서 기업 가치가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일 컫는 용어로 쓰인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CB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은 모두 393개. 이들의 누적 투자 유치 금액만 2920억달러(약 348조4000억원)가 넘었다.

'얼룩말 기업(zebra startup)'은 유니콘 기업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등장했다. 이윤 극대화에 집중하는 기존 스타트업 문화를 바꾸기 위해 등장한 윤리적이고 포용적인 기업을 뜻하는 말로, 소셜 엔터프라이즈 '히어켄'과 '스위치보드'를 각각 설립한 제니퍼 브란델과 마라제페다가 지난 2017년 '얼룩말 동맹(zebra unite)' 창립을 선포한 것에서 유래했다. 하얀 유니콘의 이미지가 백인 남성 중심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상징한다면, 얼룩말은 유색인종과 여성 등 모든 계층이 어우러진 스타트업을 지향한다. 또 유니콘은 상상 속의 동물일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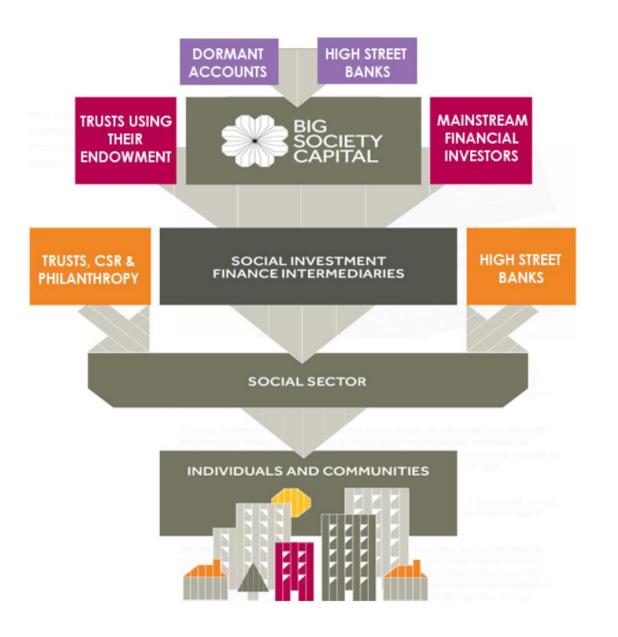
이지만, 얼룩말은 실제 생태계에서 제 역할을 하는 동물이라는 의미도 담겼다. 얼룩말 기업은 ▲점진적인 성장 ▲지속가능한 경영 ▲건강한 경쟁 ▲사회 전체의 편익 확대 ▲정보와 기술의 공유 등을 추구한다. 이는 유니콘 기업이 ▲폭발적인 성장 ▲빠른 자본 회수 ▲승자 독식 ▲투자자 이익 극대화 ▲정보와 기술의 독점 등을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다.

영국 Big Society Capital

- 빅소사이어티캐피털은 영국의 빅 소사이어티 정책의 일환으로 2010년 영국 보수당 정부 출범 이후 설립 - 2008년 영국 '휴면예금 관련 법률' 제정
- 민관협력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예산 부족과 서비스 비효율성 문제에 대응하고자 제시
- BSC는 2012년 4월 영국에서의 6억 파운드(한화 약 1조)의 기금으로 조성되어 출범된 사회투자기금
- 개별 조직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의 사회투자전문기관(Social Investment Financial Intermediaries 이하 'SIFI')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 채택

성과

- BSC의 '10년 투자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정부의 사회투자시장 육성정책의 영향으로 BSC 설립연도인 2012년 8억 파운드였던 사회투자시장은 2022년 기준 64억 파운드로 성장함
- 같은 기간 BSC의 자본금 또한 8억 3천만 파운드로 증가하였으며, 10년간 사회투자로 5,400건 이상의 지원과 2천 개 이상 기업에 투자를 진행함



* BSC 사업 구조

미국 CDFI 정책

- 1994년 클린턴 정부가 빈곤 및 금융소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개발 기금. 기금 출연과 함께 세제 혜택 등 보다 고도화된 금융 조치를 취함 (정부 출연 통해 10배 이상의 기금이 민간과 시민 부문에서 모집)
- 2021년 9월말 기준, 1,271개의 CDFI가 인증을 받았고, 45% 대출 기금, 30% 신협, 13% 은행, 11% 금융지주회사, 1% 벤처캐피탈 등으로 구성

프로그램

- 신시장 세액공제(NMTC): 지역개발회사(CDE)에 대한 투자에 세액을 공제하여 민간부문 투자를 유치
- 은행활동지원 프로그램(BEA): 자기 지역이나 다른 CDFI에 투자하는 은행에게 인센티브 제공
- 원주민 프로그램(Native Initiatives): 원주민 CDFI 및 CDFI 설립 추진 중인 원주민 공동체에 금융/기술지원
- CDFI 채권보증 프로그램(CDFI Bond Guarantee): CDFI 기관의 채권 발행 지원
- 캐피탈마그넷펀드(Capital Magnet Fund): 저소득층 및 공동체를 위한 적정 주거 분야 지원

<미국의 CDFI Fund의 구조> 재무부 * CDFI: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❸ 신시장세액공제(NMTC) Institution 할당: CDE에 투자된 투자 설립・출연 CDE: Community Development Entity 지분에 대해 7년에 걸쳐 최대 NMTC: New Market Tax Credit (10억불) 39% 세액공제 지역개발금융기관 기금 (CDFI Fund) 투자자 ❷ 은행사업투자지원(BEA) 프로그램: 저소득층 대출 금융서비스및 CDFI ● CDFI 프로그램: 민간자금과 NMTC 할당 투자 투자액의 최대 33% 지원 매칭으로 지분투자, 교부금, 대출, 기술지원(TA) 등 지원 CDFI 프로 자금 그램에 지원 가능 지역개발사업체 지역개발금융기관(CDFI) (1,095개, '17.9월) (CDE) 저축 (2,209개, '17.9월) 예금 지역개발 지역개발 기관 은행 신용협동조합 투자 지역개발 대부기금 (지역재투자법) 벤처캐피탈 (Loan Fund) 취약계층 주거지원, 서민금융, 투융자 등

*출처 – 관계부처합동,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2018.2)

제3차 사회서비스 정책포럼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1. 관련 현황

2. 국내외 사례

3. 시사점

고려사항 - 지역 착근성

(사회서비스 지역전달체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지역기반 전달체계 강화 흐름

(지역 중소기업육성) 2021년, 지역중소기업법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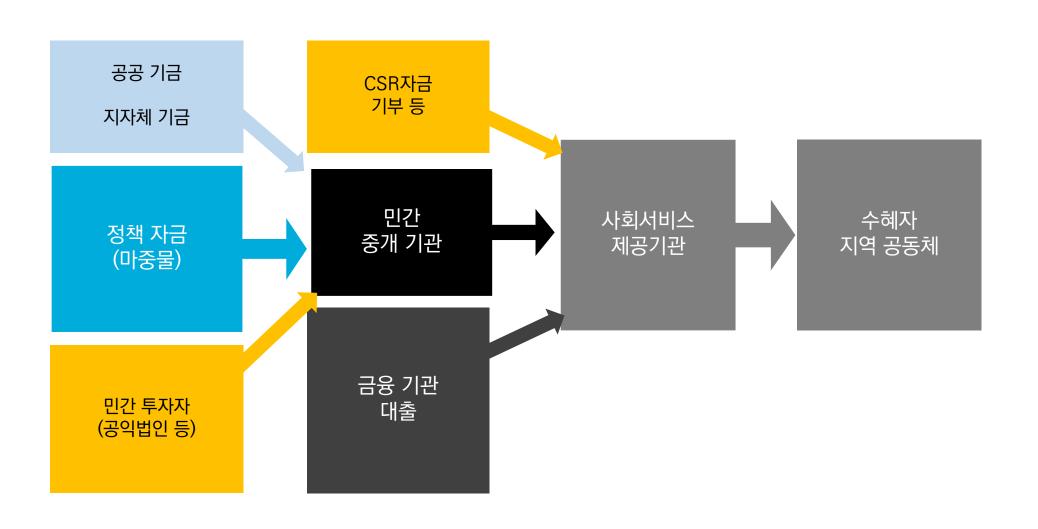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 지정, 협동기술향상
- 공공기관, 공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인프라 연계/활용

<u>핵심산업군에 속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지역기업의 특성 보유</u> 지역기업의 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금융 인프라 연계/활용 필요

☞ 미국의 CDFI 사례 참고

고려사항 - 민간 투자 활성화

금융지원 정책을 통해 <u>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민간의 자금공급을 촉진</u>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자금공급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는 방식 고려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방향

주요 방향

- · 핵심사업군에 속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성장 추동 → 성장 금융
- 중간규모 기업 육성 지역 착근, 양질의 일자리, 거점기관 역할 → 지역 금융
- 전후방 사업 육성 복지기술 개발/활용 촉진 → 임팩트 투자 활용
- 민관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체계 구축 → 민간자원 개발

자금공급 체계 – 2가지 공급 체계 균형 있게 활용

- ① 기존 금융시스템 접근성 강화 (민간 금융기관, 정책 금융기관 활용) 규모화 단계
- ② 사회서비스 맞춤형 육성체계 정립 (사회투자기관 지정, 금융도구 부여) 육성 단계

1. 금융 시스템 접근성 강화

신용 보강 (위험 흡수)

- 민간 대출에 대한 정부 보증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제도
- 매칭 대출 후순위 참여 크라우드 펀딩, 비영리 대출 기금 매칭 (손실 분담 비율 설정)
- 민간 펀드 후순위 출자 집합투자기구(펀드) 후순위 출자

이자 지원

• 위험도에 따라 대출 금리 책정 - 금리에 반영된 위험도의 일부 분담

평가 지원

-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 조회 지원
- 금융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는 평가정보 제공 평가 체계, 평가 정보 등

2. 맞춤형 육성체계 정립

육성기관 지정

- (금융관련 역량) 자금 조달(자원 동원), 자금 관리(시스템 구축), 자금 공급(기업 평가), 회수 역량(육성)
- (사회서비스 육성 역량)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이해, 유무형 자원 동원/연계, 교육/컨설팅 역량

<u> 자원동원 지원</u>

- 제도적 지원 (비영리성을 고려한 투자 vehicle 마련), 관리체계 마련 (등록/관리)
- 마중물 자금 공급 (촉매 자본, 위험 분담), 투자자 개발 (세제 혜택)
- ☞ 사회서비스 (예비) 거점기관,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대학, 지역 사회서비스원 등 참여 가능
- ☞ 시범사업 및 제도개선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
- ☞ 지자체, 지역금융기관 참여/협력 구조 마련

감사합니다.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향 및 정부의 역할

박 창 균 부원장 [자본시장연구원]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향 및 정부의 역할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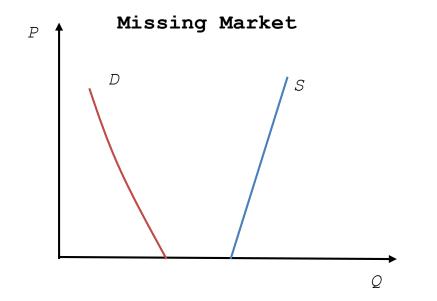
2023.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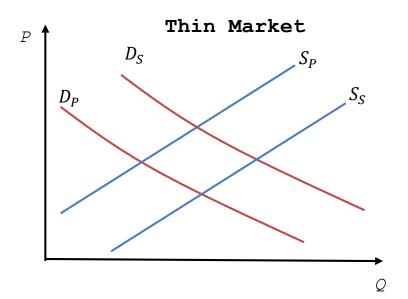
가치재로서 사회서비스와 민간시장

- 사회서비스는 (민간)시장을 통하여 공급 불가능한 공공재인가?
 - 공공재(public goods)와 사적재화(private goods)구분 기분: 소비의 배제 불가능성(non-excludability)와 비경합성(non-competitiveness)
 - 주요 사회서비스(상담, 재활, 돌봄, 역량 개발 등)는 공공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수
- 가치재(merit goods)로서 사회서비스
 - 가치재: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는 바람직한 수준까지 소비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
 - 소비의 외부성이 주요 원인이며 사회적 최적 달성을 위하여 정부 개입
 - 가치재는 공공재와 사적 재화 모두 가능하며 사회서비스는 **사적 재화로서 가치재의 성격**을 강하게 보유

시장을 통한 사적 재화의 거래

- 모든 사적 재화는 시장을 통하여 거래가 가능한가?
 - 시장을 통한 거래가 부재(missing market)하거나 극히 부진한(thin market) 사적 재화 존재
 - 가치재의 경우 일정한 수준의 거래(소비)를 위하여 정부 개입
- 정부 개입을 통한 가치재의 공급
 - 직접 공급 vs. 전달기관(agency: profit or non-profit) 통한 공급
 - 정부는 수요 뿐 아니라 공급에 영향을 주어 시장 조성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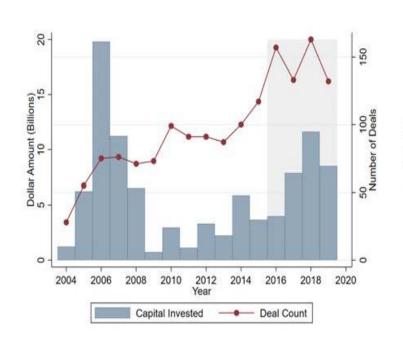
새로운 형식의 민간자본 투자 유도를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 현재 비영리 민간자본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 체제와 관련하여 ① 성과와 책무성 확보,
 - ② 재원 조달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책무성과 재정지출의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행태와 사업 결과에 대한 국가의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나 여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
 - ▶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하여 국가에 의한 모니터링은 정확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사실
 - ▶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인적·물적 자원 투입이 필요하다는 어려움이 존재
 - 일부 사회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큰 규모의 자본 투입이 요구되는데 이를 재정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무리
 - 민간자본 투자를 유도하여 사회서비스 공급 영역에서 ① 서비스 공급 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 ② 시장 규율(market discipline)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책무성을 확보하며
 - ③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추진 필요
 - ▶ 민간자본에는 재무적 수익률 만을 추구하는 자본 뿐 아니라 임팩트투자 자금이 포함
 - ▶ 사회서비스 공급 영역에서 임팩트투자 자금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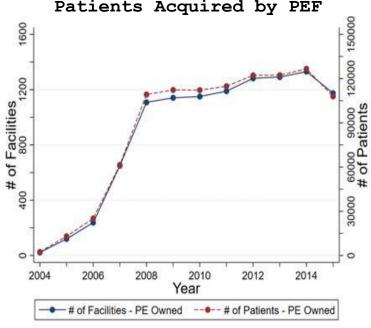
<참고> 미국 Nursing Home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

■ 2000년대 들어 미국에서 PEF(private equity fund)의 nursing home 인수 및 운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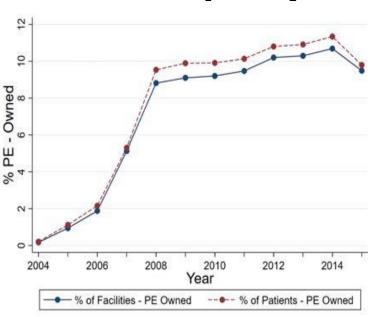
PE Deals in Eldercare



Number of Facilities and Patients Acquired by PEF



Percentage of Facilities and Patients Acquired by PEF



자료: Gupta et. al. (2023)

- PEF의 nursing home 산업 참여에 대해서는 긍정/부정론 혼재
 - 운영의 효율 증대: better financial performance(Phradan *et. al.* (2013)), more efficient use of staff(Stevenson and Grabowski(2008)) 등
 - 서비스 질 하락: lower resident well-being (Harrington et.al. (2012)), higher mortality (Gupta et. al. (2023)) 등
- PEF는 주로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률 확보를 추구
 - 직원 축소, 규제 위반 건수 증가 등을 통하여 비용 절감 노력 확인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높은 사망률 (특히, Covid 19 기간 동안)로 귀결 (Gupta *et. Al.* (2023))
 - 사회서비스 영역에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자본의 확대는 적절한 monitoring이 전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

임팩트투자

- 임팩트투자(social investment)는 경제적 수익(economic return)과 사회적 수익(social return)의 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 활동
 - 전통적인 의미의 투자가 주로 금전의 형태로 주어지는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는데 비하여 임팩트투자는 경제적 수익은 물론 비금전적 형태로 발생하는 사회적 수익이라는 두 가지 목표(double bottom line)를 동시에 추구
 - ▶ 사회적 가치는 지역사회 유대 강화, 빈곤 감축, 형평성 제고를 통한 사회 정합성(social cohesion) 강화 등 사회적 가치의 생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를 의미
 - 경제적 수익만을 고려하는 경우 정당화되기 힘든 자금투입 중 사회적 수익을 포함하여 고려하는 경우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가 상당 수 존재
-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임팩트투자 시장이 빠르게 성장
 - 임팩트투자 개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립되기 시작
 - ▶ 임팩트투자는 혁신적 방법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주체에 자금을 공급하되 재무적 수익과 사회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 활동으로 정의 가능
 - 세계은행(World Bank)은 임팩트투자의 시장규모가 2020년 말 1.6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 마이크로파이낸스나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에 대한 자금공급에서 출발하였으나 저소득층 및 개발 대상국에 대한 금융 접근성 제고, 양질의 주거서비스 제공, 의료 서비스 개선, 지속가능 농업 기반 제공은 물론 도시 재생, 지역사회 기반 돌봄 및 교육 서비스, 기후전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 임팩트투자의 확산으로 인하여 자산가의 기부나 기업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접근방식에 근본적 변화 발생
 - 기부나 사회공헌은 자금제공 자체를 중시하고 사회적 가치나 변화는 부차적인 관심사
 - ➤ 대규모 자산가나 기업이 사회적 가치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을 제공하고 자선단체(charity)나 비영리기구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
 - ▶ 거래비용(transactions cost)을 절감한다는 관점에서 사회 후생에 기여할 수 있으나 사회적 가치 생산자의 유인구조를 무시하고 이들의 선의(善意)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 과도한 운영경비 사용 등 상당한 논란 발생
 - 기부나 사회공헌에 구조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다 효과적이면서도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임팩트투자가 주목을 받고 있음.
 - ➤ 임팩트투자의 목적인 경제적 성과와 재무적 지속 가능성은 시장 규율(market discipline)을 통하여 획득
 - ▶ 임팩트투자의 주된 대상인 사회적 기업 등은 시장 경쟁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성과를 검증 받고 보상을 받음.
 - ▶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회적 기업의 경우 성과 검증을 위한 별도의 장치 필요하지 않으며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외부의 지원도 필요하지 않음.
 - 재무적 수익과 사회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생산 조직에 자금을 공급하는 특화된 별도의 투자자가 필요
 - 재무적 수익과 사회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생산 조직은 재무적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에 비하여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 애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 ▶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재무적 수익은 물론 사회적 수익을 동시에 고려하여 자금이 거래되는 임팩트투자의 역할이 중요

-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주도로 임팩트투자 시장 조성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성과는 아직 미흡
 - 정부의 자금을 위탁 받아 사회적 기업에 제공하는 비영리민간기구와 정부와 민간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회적 기업 투자조합이 국내 임팩트투자 시장에서 활약 중
 - 국내 임팩트 투자 시장은 태동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 ▶ 투자 대상인 사회적 기업 부문의 성장 부진,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체제 미흡, 지나친 정부 주도의 임팩트 투자 시장 환경 고착 등 다양한 요인이 시장 발전 지체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임팩트투자 시장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이 시장을 주도하고 공공부문이 이를 지원하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
 - 시장조성과 규모 확대에 정부가 주도하고 있으나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민간 주도 시장 구조 구축이 불가피
 - 정부는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는 등 임팩트 투자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역량 집중 필요
 - 민간 부문이 임팩트투자의 주도권을 정부로부터 이전 받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자금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역량 확보가 필수적
 - ▶ 특히 사회적 수익과 재무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자금력을 갖춘 투자자 발굴이 중요

2. 임팩트투자의 이론적 • 역사적 배경에 대한 검토

임팩트투자의 특징

- 임팩트투자는 전통적 금융투자, 사회책임투자, 기부와 구별되는 개념
 - 재무적 수익과 사회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재무적 수익 만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금융투자와 차이 ▶ 재무적 투자의 기대수익률이 임팩트투자의 수익률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
 - 사회책임투자는 투자결정에서 사회적 수익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임팩트투자와 공통점을 가지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소극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측면에서 상이
 - ▶ 투자대상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수행하지만 투자를 통하여 사회적 수익의 창출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기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임팩트투자와 다름.
 - 기부(donation)는 사회적 수익 만을 고려하여 자금 투입 여부를 결정

[임팩트투자의 특징]

	사회적 수익	재무적 수익
임팩트투자	적극적 추구	추구
금융투자	관심영역 아님	적극적 추구
사회책임투자	추구	적극적 추구
기부	적극적 추구	관심영역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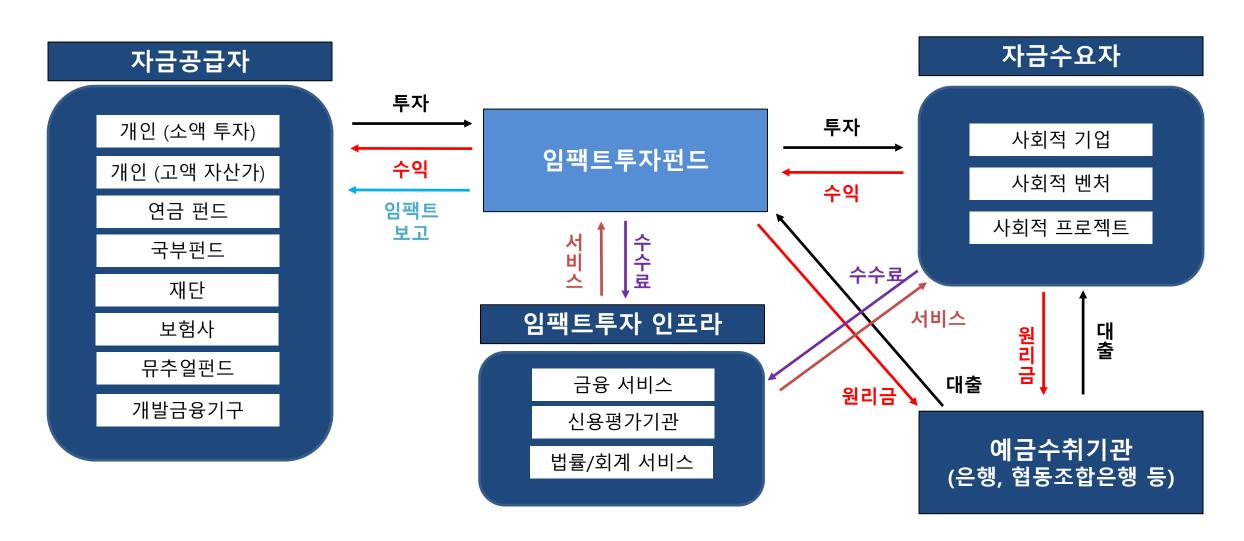
임팩트투자자의 분류

- 투자목적을 달리하는 다양한 성격의 자금이 임팩트투자시장에 유입되고 있음.
 - 개인투자자, 뮤츄얼펀드(mutual fund), 보험회사, 연금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는 시장 수익률이 제공되는 경우 투자자로 참여
 - 개발금융기관(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재단(foundation), 기업의 사회공헌자금 등은 재무적 수익과 사회적 수익을 동시에 고려하여 임팩트투자 시장에 참여
 - 정부, 재단, 종교기관, 개인의 기부자금 등은 재무적 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수익 추구를 목적으로 시장에 참여

임팩트투자펀드

- 임팩트투자펀드(impact investment fund)가 임팩트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일반 적인 금융 수단
 - 단일 투자자 또는 목수 투자자가 참여하여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투자펀드가 사회적 기업, 사회적 벤처, 사회 투자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
- 임팩트투자펀드는 사모투자펀드(private equity fund)와 동일한 구조를 가짐.
 - 펀드 조성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업무집행사원(general partner)과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로 구분
 - 전자는 일정 자금을 투여함과 동시에 조성된 자금의 운용을 전담하고, 후자는 자금을 제공하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투자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음.
 - 출자자금 이외에 금융기관 차입이나 채권 발행 등을 통하여 부채자금을 조달하기도 함.

임팩트투자 생태계



임팩트투자펀드 사례: Reinvestment Fund

- Reinvestment Fund는 미국 대도시의 슬럼 및 낙후지역 재생사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조성된 1987년 설립된 임팩트투자펀드
 - 2021년말 현재 2억 2,300만 달러의 자산을 운용 중
 - 사회적 주택, 저소득층 밀집 지역 유아 및 초·중등교육, 저소득층 밀집 지역 유통, 의료 서비스, 탄소 절감 에너지 시설, 지역사회 주도 상업용 건물 개발 등을 대상으로 융자 및 투자 자금 제공
- 자금 조성은 개인 대상 약속어음(promissory note) 발행, 기관투자자 대상 투자자금 모집, 기부 (donation) 및 지원금(grants)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
 -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발행되는 약속어음은 액면가 1,000달러, 평균 만기 의 7년, 수익률 1,5%~4% 수준
 - 빅데이터분석을 통하여 침체된 대도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필요성 및 경제성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이를 기반으로 재생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

임팩트투자펀드 사례: Vital Capital Fund

- 개발도상국. 특히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지역 기업과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 2011년 설립되어 빠르게 성장한 결과 2021년 말 3억 5천만 달러의 자산을 운용 중
 - 5개 기관 투자자 출자로 펀드 설립
- 병원, 식수 공급 등 인프라 개발, 주택 건설, 농업, 재생가능 에너지, 의료 등의 영역에 투자
 - KORA: 앙골라 도시지역에 저렴한 고품질 주택 건설을 위하여 9천만 달러 출자하여 주변 시세 대비 50% 이하의 가격으로 15,000호에 달하는 주택 공급
 - Aldeia Nova: 앙골라 최대의 농업법인에 1,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대규모 생산 시설을 기반으로 가격경쟁력과 브랜드 네임 및 식품 안전성 확보
 - Luanda Medical Center: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LMC(앙골라)에 1,660만 달러 투자하여 연간 10만여명 환자를 대상으로 약 40% 수준의 가격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
 - Tomosi's Diary: 우간다 낙농업체에 9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농촌지역 축산 농가에 위생적인 유제품 처리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낙농가의 소득 제고와 저렴하고 안전한 유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800여 농가와 계약을 통하여 연간 250만 달러에 달하는 유제품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5만 리터에 달하는 우유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영양상태 개선에 기여
 - SGWK Transmission Line: 앙골라 농촌지역 전기 보급을 위한 배전설비 건설에 3,170만 달러 투자하여 130만의 농촌 지역 거주자에 안정적인 전기 공급

임팩트투자펀드 사례: Triodos Investment Management

- TIM은 네덜란드의 상업은행인 Triodos Bank의 자회사로서 17개의 사모 임팩트투자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자산운용사
 - 네덜란드의 대표적 윤리은행(ethic bank)인 Triodos Bank를 모회사로 1990년대 초반 설립되었으며 2021년 말 현재 64억 유로의 임팩트투자 자산을 포용금융, 에너지 및 기후 변화 대응, 지속 가능 농업 등의 영역에 운용 중
 - 주식(지분 취득)과 채권(융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
 - 고액 자산가,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등 다양한 자금원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운용
 - 운용 중인 17개 투자 펀드의 수익률은 7%~14% 수준에서 다양하게 분포
- 에너지 및 기후 변화: Triodos Energy Transition Europe Fund, Triodos Greonfonds, Yriodos Emerging Market Renewable Energy Fund
- 포용금융: Triodos Microfinance Fund, Triodos Fair Share Fund, Sustainability Financial Real Economies Fund
- 지속 가능 농업: Triodos Groenfonds, Triodos Food Transition Europe Fund 임팩트 기업의 공모 주식 및 공모 회사채 투자: Triodos Future Generation Fund, Triodos Global Equities Impact Fund, Triodos Impact Mixed Funds, Triodos Pioneer Impact, Fund, Triodos Euro Bond Impact Fund, Triodos Sterling Bond Impact Fund 등 다양한 형태의 임팩트투자펀드 운용

임팩트투자펀드 사례: Japan Venture Philanthropy Fund

- Japan Venture Philanthropy Fund는 2013년 설립된 일본 최초의 임팩트투자펀드
 - Nippon 재단, 개인 및 기업 기부 자금을 재원으로 12억 달러의 자금을 조성
 - Nippon 재단과 사회투자조합(Social Investment Partners)에 공동으로 펀드를 운용하며 교육과 청년 고용, 돌봄 서비스와 여성 고용, 지역사회 개발 등을 지향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단체에 투자 및 융자 또는 기부 자금을 제공
 - After School(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 지도교사 파견: 2천만엔 융자), Teach For Japan(전문지식 보유 보조교사 파견: 3천만엔 융자), AsMama(지인 간 돌봄 서비스 공유: 3천만엔 전환사채 매입), Hattatsu-Wanpaku-Kai(취학 전 발달장애 아동 돌봄 및 치료: 30천만엔 기부) 등을 대상으로 자금 제공

사회서비스와 임팩트투자

- 정부가 공급에 대하여 궁극적 책임을 지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민간에 생산과 공급 위탁하고 있으나 서비스 질 담보와 규모의 경제 확보라는 측면에서 뚜렷한 한계를 노정
 - 정부는 민간 서비스 공급자와의 거래관계에서 수요 독점자(monopsonist)의 지위를 점하면서 최종적으로 가격을 설정
 - 정부가 서비스 가격, 즉 수가를 설정하여 제시하고 민간 서비스 공급자는 이에 맞추어 시장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실현
 - 가격이 통제되는 경우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서비스 공급자가 취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대응은 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 실제 사용해 보기 전에는 서비스의 질을 판단할 수 없는 경험재(experience goods)의 성격이 강한 사회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공급자의 비용 절감 노력이 서비스의 질 저하로 귀결되는 경우가 빈발
 - 정부는 민간 공급자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지만 적정 수준의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수준의 monitoring cost가 소요

- 분절적이고 소규모인 다수의 서비스 공급자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에서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절감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현실
 - 규모의 경제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효율규모(minimum efficient scale)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의 생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시장을 전제로 단일 공급자의 생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될 필요
 -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는 규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자본 투입이 필요한데 상당한 초기 고정 투자를 요구하는 시설형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는 특히 어려운 문제
 - 소규모 서비스 공급자의 경우 "평판(reputation)"을 통한 통제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서비스 질 저하, 종사자 처우 열악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

- 임팩트투자를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특히 대규모의 초기 고정투자가 소요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주목할 필요
 - 임팩트투자자는 일정한 수준의 사회적 수익 창출을 투자 대상인 사회서비스 공급자에게 요구할 것이므로 외부의 모니터링 없이도 서비스 질이나 종사자 처우 등의 영역에서 상당한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자금공급 대상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사회적 목적 달성을 추구하는 서비스 공급자(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 등)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이므로 평판을 통한 행위 통제가 순수 이윤 추구 공급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기대
- 대규모 고정투자가 요구되는 사회서비스 시장 진입과 규모 확대에는 자금조달 상 장애물이 존재
 - 법령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상당히 엄격한 물적·인적 요건 충족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사회적 기업이 이와 같은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
 - 임팩트투자펀드를 통하여 시장 진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할 수 있을 것
 -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 engagement를 통한 경영지원 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

혼합자본(Blended Capital)을 활용한 임팩트투자펀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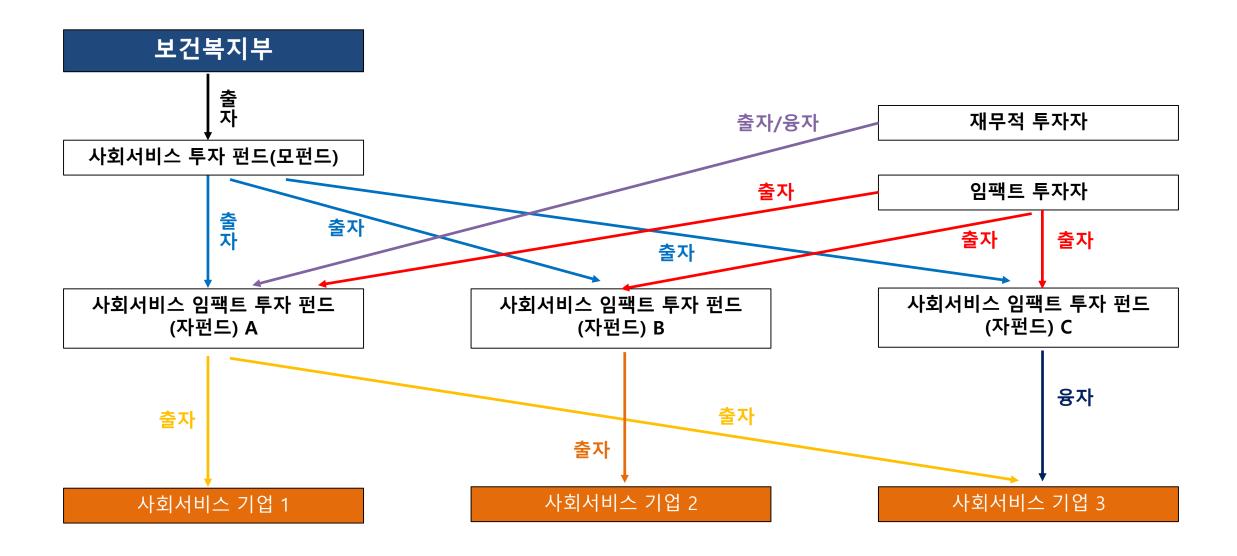
- 다양한 투자목적을 가진 투자자의 참여를 유인하여 임팩트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vehicle)의 기반 제공
 - 임팩트 투자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를 임팩트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 두 부류의 투자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익 보상체계와 위험 분담 구조가 설계된 투자 수단 (investment vehicle)을 제시할 필요
- 재무적 투자자와 사회적 투자자가 참여하여 출자하는 다층펀드(multi-layered fund) 검토
 - 펀드 자금은 수익배분 및 위험 분담 방식에 따라 A군(Class A)과 B군(Class B)으로 구분
 - Class A(B)에 속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원금배당 및 이익배당 우선권(후순위권)을 부여하되 기준수익률을 넘어서는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지분률보다 낮은(높은) 비율을 배분
 - Class A에는 재무적 투자자, Class B에는 임팩트투자자의 참여를 유도
 - 필요한 경우 정부의 보증 제공이나 순수 기부금의 유치 등을 통하여 재무적 또는 임팩트 투자자에 대한 재무적 유인을 높이는 방법도 적용 가능

혼합자본(Blended Capital)을 활용한 임팩트투자펀드 개념도

[투자대상] [투자자] [펀드] 재무적 투자자 기업의 특성에 맞게 투자 및 융자하되 • 경제적 성과 중심 Class A 펀드 전체로 일정 수준의 <u>재무적 성과 추구</u> (선순위) • 시장 수익률 추구 임팩트 기업 사회적 성과 측정, 사회적 가치 확산 임팩트 투자자 위한 기초 강화 Class B • 사회적 성과와 재무적 (후순위) 성과 동시 고려 • 시장 수익률 보다 낮은 수익률 수용 Multi-layer risk absorbing 구조로 임팩트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 공존 정부 • 사회적 성과 추구 • 여타 투자자 지원

사회서비스투자펀드 조성

- (재간접펀드) 재간접펀드는 자금의 궁극적인 수요자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나 융자를 직접 시행하지 않고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담당하는 자펀드에 출자함으로써 투자 목적 달성
 - (모펀드 결성) 정책 당국(복지부)이 출연하여 모펀드를 설립하고 모펀드 운용기관 선정
 - (모펀드 자금 배분) 모펀드 운용기관이 자금 공급 대상 사회서비스 기업을 선정할 자펀드를 선정 하고 자금을 투입
 - ▶ 모펀드의 자금 뿐 아니라 자신의 자금과 여타 투자자의 자금을 합하여 자펀드 결성
 - ▶ 모펀드의 자금을 배분할 자펀드로는 벤처투자조합이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고려할 수 있으나 사모집합 투자기구가 보다 신축적인 운용 가능
 - 사회서비스 기업에 대한 투자 뿐 아니라 융자가 가능해지기 이해서는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적합
 - 전문투자자만이 참여가 허용되어 규제가 약한 기관전용 사모투자집합기구가 보다 적합할 것으로 사료
 - (피투자기업 선정) 자펀드의 업무집행사원이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자금을 투입
- (재간접펀드 구조 장점) 정책당국 입장에서 재간접펀드 구조 활용으로 펀드 운용의 전문성 미흡 보완, 위험 분산, 민간 자금 투자 유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참고> 사회서비스 투자액 및 재정 소요 추산

사회서비스 필요 투자액 및 재정 소요 추산

(단위: 억원)

	매출액	자산	필요 투자	재정 소요
2023	1,776,882	533,065	17,769	888
2024	1,865,726	559,718	18,657	933
2025	1,959,012	587,704	19,590	980
2026	2,056,963	617,089	20,570	1,028
2027	2,159,811	647,943	21,598	1,080

주: 1) 사회서비스업 중 종합사회서비스업, 돌봄서비스업, 상담재활 서비스업의 2017년 매출액에서 매년 5% 증가를 가정하여 추산

²⁾ 자산 규모는 2009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기타전문서비스업의 자산회전율 평균을 사용하여 환산

³⁾ 필요 투자액은 30년의 감가상각기간을 가정하여 산출

⁴⁾ 재정 소요액은 필요 투자액의 10%를 사회서비스 임팩트투자펀드가 공급하며 민간 자금 매칭 비율 50%를 가정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방향

김 효 선 변호사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방향

2023. 9. 8.

김효선 변호사

금융지원의 의미

일반적으로 법률상 "금융지원 " 은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자금을

융자, 보증, 투자 등의 지원을 하는 것을 의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금융 지원) ① 정부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 3. 22.〉 ②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의 설립 및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 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 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금융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립한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 하여금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 또는 투자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창업기업 융자·투자 등 금융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창업기업등과 창업지원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출연·보조·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금융지원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창업기업등에 대한 민간의투자 촉진, 창업기업 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등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내의 정책금융지원

	중소기업 금융지원	서민금융지원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	저신용·저소득층, 영세 개인사 업자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 등, 자활기업, 마을기 업 등)
지원내용	융자(직접, 간접), 보증, 투자	융자, 보증	융자(직접, 간접), 보증, 투자
재원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 금, 지자체 중소기업 육성 기금	1(으며(삐글・구프스의글 싱글물	정부예산, 민간출연금지자체 사회적경제 육성 관 련 기금
추진체계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재단, 민간사업수행기관), 신용회복 위원회	
추진체계 지도·감독	중진공, 기보, 한벤투: 중기부신보: 금융위	서금원, 신용위: 금융위	-
근거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 에 관한 법률 등	<u>서민금융법</u>	 사회적기업육성법(사회적 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기업) 지자체 사회적경제 육성 관 련 기금

중소기업금융지원의 법적 근거

■ 정책목표와 지원체계를 법률로 규정

중소기업기본법

제18조의2(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

- ① 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금융 및 세제 조치)

-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자금 공급의 적정화(適正化)와 신용보증제도의 확립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구조>

제1장 총칙

제2장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제3장 삭제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제5장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제63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제64조 기금의 조성

제65조 채권의 발행

제66조 기금의 운용과 관리

제66조의2 기금운영계획안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

제67조 기금의 사용 등

제6장 중소벤처기업공단

제68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제69조 중소기업제품 • 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

제70조 정관

제71조 운영위원회

제72조 임원

제73조 이사회

제73조의2 이사장의 대표권제한

제73조의4 비밀누설의 금지

제74조 사업

제74조의2 연대보증채무의 감경 • 면제

제75조 자금의 조달

제76조 비용 부담

제77조 예산과 결산

제78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서민금융지원의 법적 근거

■ 정책목표와 지원체계를 법률로 규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민금융법의 구조>

제1장 총칙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제1절 통칙 제2절 운영위원회 제3절 임원과 직원 제4절 휴면예금관리위원회 제5절 업무 제6절 재무 및 회계 제7적 흐면에금등과리계정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제1절 통칙 제2절 위원회의 구성 등 제3절 재무 및 회계 제4절 채무조정의 지원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제6설 새우 및 외계 제7절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제8절 서민금융보완계정 제9절 자활지원계정	

사회서비스 금융지원의 법적 근거

■ 사회서비스 금융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민간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2. 사회보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 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3.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원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이하 "공공성등"이라 한다)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하고,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여야 한다. 〈중략〉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가 국민에게 적절하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민간 부문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그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적절한 관리·감독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중략〉

■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업무에도 금융지원 관련사항 부재

사회서비스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 사회서비스 금융지원 제도화를 위해 고려할 사항



- 정책목표의 구체화와 성과관리를 통한 금융지원의 효과성 제고
- 정책금융지원은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민간에 융자, 보증 등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지속적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성과관리가 필수적임
- 금융지원을 제도화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통해 체계적으로 성과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 예) 소상공인지원 융자사업의 성과지표: 수혜, 비수혜 기업간 매출 증가업체 비율 차

사회서비스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 추진체계

▶ 기존 추진체계 활용

- 기존의 정책금융지원 추진체계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추진체계와 서민금융지원 추진체계임. 이중 사회서비스 금융지원 특성이 고려될 수 있는 추진체계는 서민금융지원 추진체계로 판단됨.
- 다만, 추진체계가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이 있어야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의 개발, 금융지원 대상 선정 및 관리가 가능할 것. 이러한 점에서 소관부처 및 중서원과 서민금융 추진체계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됨.

▶ 새로운 추진체계의 가능성

-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과 금융지원 기능을 갖춘 별도의 추진체계를 설립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설립된 중앙사회서비스원에 금융지원 업무를 추가하고, 금융지원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을 고려.

사회서비스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 안정적 재원 확보

- ▶ 정부 및 지자체 출연
- 정부 및 지자체 출연에 기반한 안정적 재원 확보도 중요하고, 이를 위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 ➤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재원 결합 유도
-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 민간 재원으로 공익법인의 적극적인 사회투자를 독려하는 방안을 고려
 - ✔ 사회복지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사회투자에 대한 승인기준 마련
 - ✔ 공익법인의 사회투자를 세법상 직접 공익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



감사합니다



2023년 제3차 사회서비스 정책포럼